

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5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제1차 건설위원회 (1993. 12. 2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이 종 익)

가. 제안이유

내무부소관의 특별회계 통합 조처에 따라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특별회계를 폐지
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및 목적의 특별회계 내용 삭제
- 조례중 제3조(세입), 제4조(세출), 제8조(예비비), 제9조(준용) 및 특별회계의
관직지정을 삭제
- 주택개량사업 대출금리 인하 조정 (8%→ 6.5%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내무부 소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특별회계 폐지 및 관직 지정의 삭제, 주택개량사업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5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.

나. 신규조문 대비표 1부.